

제187회 거창군의의회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77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77
----------	-----------

제출연월일	2012. 10. 1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과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를 정비하여 군민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1) 현행 : 3년 이내, 실적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2) 변경 : 5년,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1조)

#### (1) 현행

- 휴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제16조)
-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준용(제17조)
- 징계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준용(제20조)

#### (2) 변경(안 제21조) ← 제16조·제17조·제20조 삭제

- 준용 :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준용

### 다. 「영유아보육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함 (안 제6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9조·별지 제2호서식)

- (1) 시설장 ⇒ 어린이집의 원장
- (2) 종사자 ⇒ 보육교직원, 직원
- (3)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4)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라.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의2, 별표 8의2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8.20. ~ 2012.9.10.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시설장을 맡고 있는 자들은 임용당시 현행 조례만을 보고 계약을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보호 원칙에 합당하다고 사료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잔여근무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음.</li> </ul>	미 반영
공립 어린이집 원장 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원칙에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영 및 위탁 원장의 임기를 10년만 보장한다는 조제는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의 경우, 현 조례에 근무상한 연령을 명시(시설장 60세, 보육교사 57세)하고 있으며, 위탁의 경우는 계속 연임이 불분명하므로 명시 불필요</li> </ul>	미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조례에 임기를 다한 원장에 대하여 위탁체 신청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판단되며, 원장 임용 연령을 50~55세로 규정한다면 60세 정년을 맞출 수 있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신청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li> <li>○ 시설장 임기제 시행으로 전체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발전에 기여.</li> </ul>	일부 반영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된 보육시설인”을 “설치된”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중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직접”을 “직접 원장이 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6항 중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의료급여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계약의 해제”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해제”를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종사자 관리”를 “보육교직원 관리”로 한다.

제12조 제목 “종사자 임면”을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는”을 “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기타종사자는”을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종사자별”을 “보육교직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시설장의 임기”를 “원장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시설장 및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사자를”을 “보육교사 및 직원을”로 한다.

제16조·제17조를 삭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교육청초등장학사”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관련 장학사”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시설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종사자”

를 “직원”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u>설치된 보육시설</u>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설치된</u> ----- -----</p>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u>기타</u>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제4조(보육대상) ----- ---- <u>그 밖의</u> ----- -----</p>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p>	<p>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p>
<p>7. 일반가정 자녀</p>	<p>7. 일반가정 자녀</p>	<p>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킬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u>시설장이</u>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보육료) ----- ----- -----<u>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u>----- -----</p>
<p>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u>직접</u>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④ (생략)</p>	<p>제7조(위탁운영) ① ----- ----- ----- ----- -----<u>직접 원장이 되어</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보육정책위원회</u>-----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운영기간) <u>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u></p>	<p>제8조(위탁운영기간) <u>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제14조의 원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략)</p> <p>⑥ 수탁자는 <u>종사자를</u> 관리함에 있어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보육교직원을</u>----- -----<u>「국민건강보험법」</u>----- -----</p>
<p>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u>해제</u>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시설장이 수탁자인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때</u></p> <p>4. (생략)</p>	<p>제11조(계약의 해지) ----- ----- -----<u>보육 정책위원회</u>----- <u>해지</u> ----- ----- 1. ~ 2.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장 <u>종사자 관리</u></p> <p>제12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u>기타종사자</u>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p>	<p>제3장 <u>보육교직원 관리</u></p> <p>제12조(임면) -----원장 ----- 직원은 원장----- -----원장 ----- -----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원장-----</p>
<p>제13조(종사자의 자격)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u>종사자별</u>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p> <p>1. 시설장 : 60세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 : 57세 ② ~ ③ (생략)</p>	<p>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 ----- ----- -----<u>보육교직원</u>----- -----<u>보육교직원의</u>----- ----- 1. 원장 : ----- 2. -----직원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시설장의 임기) ①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제14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보육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14조의2(원장의 임기) ① ----- -----원장 ----- -----<u>보육정책위원회</u>----- ----- ② ----- -----<u>원장</u>----- ----- -----<u>보육</u> <u>정책위원회</u>----- -----</p>

현행	개정안
<p>제15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시설장 및 종사자</u>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u>종사자</u>를 전보한다.</p>	<p>제15조(전보) ----- ----- <u>보육교직원을</u> ----- ----- <u>보육교사</u> <u>및 직원을</u>-----</p>
<p>제16조(휴가) 어린이집 <u>종사자의 휴가 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u>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p>	<p>&lt;삭 제&gt;</p>
<p>제17조(휴직) 어린이집 <u>종사자의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휴직에 관한 사항</u>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p>	<p>&lt;삭 제&gt;</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어린이집 <u>종사자</u>의 징계 의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u>교육청초등장학사</u>로 구성한다.</p>	<p>제18조(징계위원회) ① ----- <u>보육교직원</u>----- ----- ② ----- ----- ----- <u>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 관련 장학사</u>-----</p>
<p>제19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u>시설장</u> : 군수 또는 수탁자 2. <u>보육교사</u> 및 그 밖의 <u>종사자</u> : 임면권자</p>	<p>제19조(징계권자) ----- 1. <u>원장</u>----- 2. ----- <u>직원</u> : ---</p>
<p>제20조(징계) 징계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p>&lt;삭 제&gt;</p>
<p>제2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u>보육관계 법령·지침에 의한다</u>.</p>	<p>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u>,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p>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아림로 66</u>
상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상동8길 7</u>
중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대평7길 20-5</u>
동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중앙로2길 19</u>
위천어린이집	거창군 위천면 <u>원학길 357</u>
소만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u>소만2길 62 소만주공 아파트 104동</u>



## ○ ○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거창군이 설치한 ○○어린이집(주 소)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 소)을 “을”이라 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케 한다.

1. 시설명 : ○○어린이집
2. 소재지 : 거창군 ○○읍면 ○○로 ○○
3. 재산표시 : ·부지 :             $m^2$ , 건평 :             $m^2$   
·건물구조형태 명기 (비품목록은 별첨)  
·수용정원 :            명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 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에 해당하는 보증인 포함)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 용 식